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25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안예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270,68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270,68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제조 및 판매업(의료용구, 위생용품, 의약품, 식품), 수출입업(의료용구, 위생용품, 의약품, 식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C은 2015. 2. 16.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원고 소속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용소모품의 관리 및 보관,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변제계획서의 작성 등

- 1) 원고는 C이 원고의 재고물품을 무단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C은 2018. 9. 13.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 2) C은 2018.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필로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변 제 계 획 서

1. 총 피해금액 4억 중에 12월 31일까지 2억 원을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10월 31일까지 1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12월 31일까지 상환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4. 2019. 1. 31.~2020. 12. 31.까지 월 200만 원씩 지불하겠습니다.
5. 2019. 12. 31., 2020. 12. 31. 각각 26,000,000원씩 추가 지불하겠습니다.

6. 개인사업체를 차려서 대출금이 나오면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3) C은 2018. 9. 18. “본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자진 상환하기 위해 회사를 퇴직 하려 합니다. 반드시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하였다.

다.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8. 9. 18.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에 ‘C이 원고의 물품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외부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C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223호로 ‘2016. 5. 2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원고의 물품을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42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위 법원은 2020. 2. 11. ‘C은 원고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5. 23. 원고의 창고에서 3M 반창고, 손 소독제 등 의료용소모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기존 거래처인 D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약 1년 6개월간) 총 41회에 걸쳐 원고의 돈 38,9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및 경과

1)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5019호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9. ‘C은 이 사건 변제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에서 C이 변제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0,000원 중 변제기가 도래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2020. 7. 14. 위 판결에 기해 집행문을 교부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61360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 등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8.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3)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458호로 항소심이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약정금청구를 취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을 구하였고, C은 급여 및 퇴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 9. 2. “C은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C에게 20,304,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은 모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7464).

마.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

피고 명의의 각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10. 30.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목록과 같이 C 등으로부터 총 303,361,155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동안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던 의료소모품 거래처[G, (주)H, I, J 등]의 거래대금을 이 사건 이체금과 같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본인

스스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와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증여계약에 의한 각 송금행위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도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4. 기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인 224,270,685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2) 설령 C이 증여의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과 같이 송금하게 하거나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빌려 이를 사용하기 위한 의사로 위와 같이 송금하게 하거나 송금한 것이라고 한다면 각 송금행위마다 C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송금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위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도 위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4,270,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C의 책임재산을 해할 만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책임재산을 해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C의 배우자인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30.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이체금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C의 이 사건 이체금 관련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체금이 송금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으로부터 C의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이 사건 계좌와 C의 E은행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이 반복되어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송금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이체금이 입금될 때마다 C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도,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청구권이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피고가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C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계좌의 각 개설일에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금 관련 개개의 송금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좌 및 이체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금 관련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C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승현, 판사 전승환

별지

순번	날 짜	입금액	송금인	입금받은 계좌
1	2018. 10. 30	7,878,000		
2	2018. 10. 30.	1,160,400		
3	2018. 10. 31.	3,333,300		
4	2018. 10. 31.	8,774,800		
5	2018. 10. 31.	3,000,000		
6	2018. 11. 29.	4,975,500		
7	2018. 11. 30.	10,000,000		
8	2018. 11. 30.	3,183,000		
9	2018. 12. 29.	8,058,700		
10	2018. 12. 31.	3,586,000		
11	2018. 12. 31.	1,496,000		
12	2018. 12. 31.	3,093,590		
13	2018. 12. 31.	3,159,240		
14	2018. 12. 31.	1,300,000		
15	2019. 1. 29.	936,840		
16	2019. 1. 31.	5,000,000		
17	2019. 1. 31.	6,814,400		
18	2019. 1. 31.	1,720,600		
19	2019. 1. 31.	1,387,800		
20	2019. 2. 14.	2,000,000		
21	2019. 2. 27.	2,700,401		
22	2019. 2. 27.	9,120,000		
23	2019. 2. 28.	6,000,000		
24	2019. 2. 28.	1,453,060		
25	2019. 2. 28.	1,720,500		
26	2019. 3. 8.	6,000,000		
27	2019. 3. 29.	6,509,600		
28	2019. 3. 29.	4,689,800		
29	2019. 3. 29.	9,600,000		
30	2019. 4. 28.	3,460,024		
31	2019. 4. 30	29,000,000		
32	2019. 4. 30.	4,000,000		
33	2019. 4. 30.	3,287,200		
34	2019. 5. 1.	4,302,400		
35	2020. 7. 15.	4,000,000		
36	2020. 7. 29.	3,000,000		
37	2020. 7. 31.	8,400,000		
38	2020. 7. 31.	3,600,000		
39	2020. 7. 31.	700,000		
40	2020. 7. 31.	6,500,000		
41	2020. 8. 3.	950,000		
42	2020. 8. 10.	2,000,000		
43	2020. 8. 11.	670,000		

44	2020. 8. 14.	30,000,000		
45	2020. 8. 21.	1,800,000		
46	2020. 8. 21.	8,360,000		
47	2020. 8. 31.	9,300,000		
48	2020. 8. 31.	9,300,000		
49	2020. 9. 2.	7,600,000		
50	2020. 9. 8.	4,180,000		
51	2020. 9. 29.	7,500,000		
52	2020. 10. 13.	12,000,000		
53	2020. 10. 29.	2,000,000		
54	2020. 11. 2.	11,500,000		
55	2020. 11. 30.	6,600,000		

1) = 원금 185,000,000원 + 2018. 11. 1.부터 2021. 9. 2.까지 연 5%의 이자 26,254,795원 +
2021. 9. 3.부터 2022. 4. 4.까지 연 12%의 이자 13,015,890원